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[의견표명]

□ 민원 제목 : 행정 목적을 상실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이행촉구

□ 신청 취지

- 피신청인이 신청인 △△△에게 한 “국유재산 용도 폐지신청 거부 처분”은 위법·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구함.
- 신청인은 안성시 ▽▽면 ▽▽리 ☆번지 농지 소유자로 그 농지와 접한 국유재산 구거 부지가 공부 상 구거일 뿐 현실 이용상황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재해로부터 멸실된 구거로 그 형태도 모호하고 ◎◎로와 단절된 채 외형상 식별이 불분명함은 물론 물이 흐르거나 흐른 흔적도 없으므로 국유재산(구거) 용도폐지 요구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신청인은 2014년 ▽▽면 ▽▽리 ☆번지 일원 부지의 우·오수를 ▽▽면 ▽▽리 산 ☆☆번지에 배수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음.
- 신청인은 인근 산지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배수하는 구거 기능을 수행하는 ▽▽리 산 ☆☆번지에 흙관 및 PVC관을 매설하여 기 설치된 맨홀과 연결하고자 하였음.
- 현장확인 결과, ▽▽면 ▽▽리 산 ☆☆번지는 지적도와 일치하게 폭이 좁고 긴 모양의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등 구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, 인근 산지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리도 ○○○ 호선 및 리도 내 맨홀로 배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구거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.

□ 사실관계

- 안성시 ▽▽면 ▽▽리 산 ☆☆번지 구거 13m²에 대하여 하수관 매설 목적으로 목적 외 사용허가 승인받음.(2014 ~ 2026.12.31.)

□ 관계 법령 등

- 「국유재산법」 제4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함.

□ 판단 및 결론

- ▽▽면 ▽▽리 산 ☆☆번지 구거 부지는 현재의 이용상황을 보면 물이 흐른 흔적도 없고 형태도 없어 보이며, ◎◎로와 단절되어 리도 내 집수정으로 배수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도로 밑 구거로 물이 연결되어 흐르지 않아 도로 위 구거부지에 대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됨.
- 또한, 구거의 일부를 용도폐지 할 수 있고 구거가 아니더라도 산 지형을 볼 때 다른 부분으로 배수가 가능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멸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 국유재산은 “행정 목적을 상실하였다” 고 보아 관계부서에 용도폐지 불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“의견표명” 함.

☞ 불수용